의안번호	제 210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0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 중요 전략사업 중 하나인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단기 계획의 수립·시행과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지원 및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육성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

○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수탁자등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신설(안 제7조)

○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 정비(안 제9조)

-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과학인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
-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형태를 비상설로 전환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붙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비을”을 “설비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승강기산업 육성사업)”을 “(승강기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학·연·관”을 “국내외 산·학·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기술·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승강기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승강기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시자가 승강기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중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 1. ---------- 설비를 ----.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승강기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	제5조(승강기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학·연·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국내외 산·학·연·관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	

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의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기술·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구성한다.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승강기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승강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승강기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승강기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⑧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승강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승강기산업 지원사업 대상의 명확화와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승강기산업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6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승강기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나. 추계 결과

- 승강기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 1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승강기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외수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